### 전북제일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

재정 2021. 04. 22. 개정 2023. 05. 24. 2024. 06. 13. 2024. 10. 30. 2025. 03. 06.

####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항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6호, 교육부 고시 2015-74호(2015.9.23.), 제2015-80호(2015.12.1.), 제2017-108호(2017.1.6.) 및 제2017-131호(2017.9.29.), 제2018-150호(2018.4.19.), 제2018-162호(2018.7.27.), 제2019-211호(2019.12.27.), 제2020-225호(2020.4.14.), 제2020-236호(2020.9.11.), 제2020-248호(2020.12.31.), 제2022-2호(2022.1.17.), 제2022-33호(2022.12.2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 제2024-5호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장 교육과정위원회

제 2조(기능) ①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대한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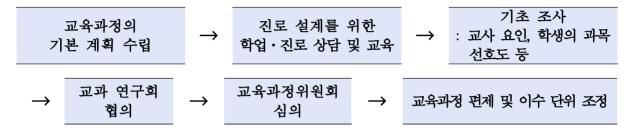
-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
- 2. 선택과목 개설 및 수업의 운영에 관련한 사항
- 3. 교수・학습 계획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
- 4. 교과의 대체 이수에 관한 사항
- 5.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 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의사결정에 자문의 역할을 수행한다.
- 제 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교감)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당연직에 해당한다.
  - 1. 교육과정지원부 부장
  - 2. 교무기획부 부장
  - 3. 교육연구부 부장
  - 4. 각 교과부장(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체육・예술, 생활・교양)
  - 5.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간사)
  - 6. 위의 1, 2, 3, 4, 5호가 중복되는 경우, 겸임한다.
  - 7. 위원회 아래에는 각 교과연구회를 두어 운영하며, 교과연구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제 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간사는 관련 사무 처리(회의 자료 준비, 안건의 사전 조율, 회의록 작성,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등)를 담당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3장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제 5조(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① 교육과정 편성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② 교육과정지원부장 및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는 필요 시,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③ 학급 담임 교사 및 진로 상담 교사, 교과 담당 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와 정보를 본교 학생에게 제공하며 진로 설계를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
  - 1. 본교 재학생에 적용되는 교육과정 관련 제반 사항
  - 2. 대학 계열 및 학과별 이수 권장 과목
  - 3.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과목에 대한 사항
  - 4. 각 대학입학전형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5. 본교 선택과목 수강신청 절차 및 방법
- ④ 교육과정지원부장 및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는 학급 담임 교사와 진로 상담 교사, 수업 업무 담당 교사의 협조를 받아 과목 개설과 관련한 교사 요인과 함께 학생을 대상으로 온·오프라 인 설문 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과목 선호도를 조사한다.
- ⑤ 위원회는 교과연구회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목의 이수 시기 및 학점을 심의한다.
  - 1. 보통교과의 선택과목은 전 과목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없 거나, 학교의 여건으로 인해 편성이 어려운 과목은 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편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2. 보통교과 이외의 과목은 학생의 이수 희망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편성 여부를 결정한다.
  - 3. 교육과정 편성 시 과목의 성격과 위계성을 고려하며, 이수 시기와 학점을 교과연구회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4.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이 어려운 과목은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소인수 과목 등의 다양한 이수 방법을 학생에게 안내한다.
  - 5. 과목의 교육과정 편성과 과목 개설에 관한 사항은 분리하여 운영한다. 과목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 ⑥ 편성이 완료된 교육과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며, 심의 통과 후 가정통신 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에게 안내한다.
- ⑦ 본 규정 이외의 관련 사항은 상급 기관의 지침과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한다.

제 6조(수강신청 절차) 다음 연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수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학사력 등 본교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사전 수요 조사	수강 신청	수강 신청 변경	수업 운영 준비
[3월] - 교육과정 설명회 진행 [6월] - 과목 선택에 관한 학생 상담 운영 - 1차 선택과목 수요 조사 진행 - 1차 선택과목 수요 조사 결과 분석 (분반 편성 가능 여부 판단) [7-8월] - 교육과정 박람회 등을 통한 과목 안내 - 2차 선택과목 수요 조사 진행 - 2차 선택과목 수요 조사 진행 - 2차 선택과목 수요 조사 결과 분석 (분반 편성 가능 여부 판단) - 수강 신청 대상 과목 확정 - 차연도 교육과정 편성안 마련	[9월] - 최종 수강 신청 - 차년도 교육과정 편성안 1차 확정 (개설 과목 확정) - 수강 신청 변경 기간 및 절차 안내 [10월] -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운영 - 수강 신청 변경 완료 - 교과서 주문	[11월] - 차년도 교육과정 편성안 최종 확정 - 수강생 및 수업 분반 최종 확정 - 차년도 소요 예정 교원 수 확인	[12-2월] - 수업 시간표 작성 (학생별, 교시별, 교실별) - 수업 운영 준비

제 7조(사전 수요조사)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안의 확정과 수강 신청 대상 과목의 결정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의 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1. 사전 수요조사는 제5조 ①항에 따라 본교 1, 2학년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위한 학업·진로 상담 및 교육이 완료된 후에 시행한다.
- 2. 사전 수요조사는 연 2회 이상,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하며 최종 수강 신청 및 교과서 주문 시기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을 탄력적으로 결정한다.
- 3. 1차 선택과목 수요조사는 1학기 내에 시행한다.
- 4. 사전 수요 조사의 결과는 전체 구성원들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결과와 함께 교사의 과목 개설 신청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수강 신청 대상 과목을 결정한다.
- 5. 사전 수요조사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각 교과연구회와 수강 신청 대상 학년의 학년 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한다.
- 6. 사전 수요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 8조(수강 신청) ① 수강 신청 및 수업 운영 계획 수립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1. 학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2. 과목선택을 위한 상담 및 교육
- 3. 기초 조사 : 선택과목 수요 조사
- 4. 수강 신청
- 5.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 선택과목 개설
- 6. 수강 신청 조정 : 미개설 과목, 진로 변경 등의 사유
- 7. 최종 분반 편성 및 수업 시간표 작성
- ②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는 본교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업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 1. 희망 진로
  - 2. 적성 및 흥미
  - 3. 진로 탐색 결과
  - 4. 진로 관련 체험 활동 내용
  - 5. 진로 적성 검사 결과
  - 6. 희망 선택과목의 본교 교육과정 편성 여부
  - 7. 과목 이수 현황 체크리스트
- ③ 학급 담임 교사, 진로 상담 교사, 교과 담당 교사는 학업 계획서와 여건 등을 바탕으로 학생과 수강 신청을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
- ④ 상담이 완료된 후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프로그램 웹사이트 또는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강신청을 진행한다.
- ⑤ 수강신청이 완료된 후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는 학생들의 과목별 신청현황 통계자료와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개설 가능 과목 목록을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 9조(선택과목 개설 및 폐강) ① 본교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과목의 개설을 위한 최소 수강 신청 인원은 아래의 표와 같이 한다.

신청인원					
9명 이하	10명 ~ 14명 이하				
폐강	교과부의 교과 협의회 논의 후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				

- ③ 과목별 분반을 위한 최대 인원은 **학년당 학급 평균 인원수**×120(%)(00명)로 한다. 단, 이는 본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④ 위 조 ②항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목을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 1. 해당 교과목의 편성 · 운영이 법령이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 2. 수업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3. 수업에 필요한 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⑤ 위 조 ④항의 이유로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설이 불가한 사유를 학생에게 안내하고, 희망 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제시하거나, 공동교육과정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다.
- ⑦ 위 조 ②항의 조건을 충족하여 다음 학년 교육과정을 확정한 후, 학년말에 위탁 교육, 학적 변동 등으로 인한 인원 변동으로 개설 가능한 과목의 수강 신청 인원이 최소 수강 신청 인원 보다 미만으로 변동될 때에는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과목 개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 10조(학생의 선택과목 변경) ① 미개설 과목 수강 신청 학생과 진로 변경 학생을 위한 '수강 신청 변경 기간'(수강 신청 후 일주일)을 두어 운영하며,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이후의 과목 변경 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②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종료 후, 학생이 수강 신청을 통해 선택한 과목은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종료 직후의 일주일의 기간 동안 학생, 학부모의 '최종 수강 신청 확인서' 제출을 완료함으로써 수강 신청을 확정하고 교과서 주문, 과목별 분반 수 결정, 시간표 작성, 교사 수급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 ③ 위 조의 ①항에 따른 수강 신청 변경 기간 동안, 학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학년별 과목 이수 담당자와의 상담을 거쳐 선택과목을 변경한다.
- ④ 위 조의 ①항, ②항의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최종 수강 신청 확인서 제출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과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순서	절차	내용
		• 학생의 진로, 진학 및 적성과 관련하여 과목 변경에
1	학생의 선택과목 변경 희망	대한 신중한 검토 필수
		· 과목 변경 이후 학업 계획서 작성
2	선택과목 변경 희망서 및	• 선택과목 변경을 위한 9단계 상담 시행
2	학업 계획서 작성	• 선택과목 변경에 따른 학업 계획서 작성
3	선택과목 변경 희망서 및	• 선택과목 변경 희망서와 학업 계획서를 담당부서
3	학업 계획서 제출	(교육과정지원부)로 제출
1	결과 안내	• 선택 과목 변경 가능 여부를 교육과정위원회에서
$4 \mid$	설탁 한테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생에게 안내

- ⑤ 위 조의 ④항에 따른 절차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선택과목 변경 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④항의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수강 신청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 1. 수강 신청 변경 조정 기간이 지난 경우
  - 2. 선택과목 변경 사유가 학생의 진로와 무관한 경우
  - 3. 단순한 교우 관계, 교사에 대한 선호에 따른 경우
  - 4. 교사 인사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5. 학교 여건 상 새로운 과목의 개설이 어려운 경우, 또는 변경 전 교과의 폐강이 될 수 있는 경우
  - 6. 학급 편성이 곤란한 경우
  - 7. 수업 시간표 편성이 곤란한 경우
  - 8. 당해연도 2학기 방학식 이후(절대 변경이 불가하며 구체적인 날짜는 별도의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한다.)
  - 9. 석차 등급을 산출하는 과목의 1등급 인원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 10. 기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 11조(수업 시간표 편성) ① 수업 시간표는 교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학교 관리자, 교육과정지원부장, 각 교과부장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② 수업 운영 계획은 교원 정원 및 인사 요인이 확정된 학년말에 수립한다.
- ③ 학급 편성과 분반 구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엔 이동 수업을 시행한다.
- ④ 이동 수업 교과 담당 교원의 결강 사유 발생에 따른 보강 수업은 공간 시간에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강 시간에 보강 수업이 어려울 경우, 수업 운영 계획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방과 후나 주말 등의 시간을 활용해 보강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⑤ 교사의 결강에 따른 공강 발생 지도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결・보강 처리 기준에 따른다.

- 제 12조(공강 운영) ① 학생 선택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따라 학생별 공강 시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강 시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② 공강 시간 지도(관리) 교사는 수업 시수, 담당 업무량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 부칙

- 가. 본 규청은 전체 교사 대상 의견 수렴과 교과별 협의 과정을 거쳐, 교육과정위원회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통해 개정한다.
- 나. 본 규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선택 과목 변경 희망서

입학 연도		학번				성명			
			-	수강 신청 변경	내역				
교과(군)	변경 전	과목명	변	년경 후 과목명		변경 사유			
단계	상담자			상담 날짜		상담 내	용	서명	
1단계	부모	님							
2단계	담임 3	교사							
3단계	변경 전 교과 3	교사							
4단계	변경 후 교과 1								
5단계	진로진학상[ 교시	담부 부장							
6단계	교육 과정	담당교사							
7단계	교육과정 부장교								
8단계	교감 선	!생님							
9단계	교장 선	!생님							

본인 확인:

(인)

<sup>※</sup> 변경 사유는 구체적으로(과목 폐강, 진로 변경, 담임 선생님 상담 등) 기재하기 바 랍니다.

<sup>※</sup> 수강 과목의 중도 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였으며,이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인지하였습니다.

# 학 업 계 획 서

학번 : 이름 :

		역량	목표 수준	현재 수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
1	교	내신등급 평균 등급			
	과	모의고사 평균 등급			
		교과관련 수상 실적			

		역량		목표 수준	현재 수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
			자율활동			
	사 창의	창의적	동아리활동			
2	비교	체험활동	봉사활동			
	과		진로활동			
		교내 활동				
		리더십 발휘 활동				
		창체 관련 수상 실적				

학업	겨	획	大
----	---	---	---

# 학 업 계 획 서

학번 : 이름 :

		역량	목표 수준	현재 수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
1	교	내신등급 평균 등급			
	과	모의고사 평균 등급			
		교과관련 수상 실적			

		Ç	격량	목표 수준	현재 수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
		자율·자치	자율활동			
		활동	자치활동			
	비	동아리 활동	학술·문화 활동			
2	교 과		봉사활동			
	7-1	진로	진로 탐색			
		활동	진로설계및실천			
		리더십 발휘 활동				
		창체 관련 수상 실적				

하어	계회서	1

~~	TI	! 준비상황윽 기반으로	구나내 뭐 이	-1~		ᄀᅟᆠᄓᄉ	ᆲᆂ	
/.V.   FOI		<u>                                    </u>	77 DF 77 UI	OF U	1 DH 24 JE3	2010	лош	